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집행정지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0-5271호(2020.3.4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, 그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	집행정지 사유
주석종합 건설(주) (김**)	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,1동 705호(신곡리, 정다운 가)	건축공사업 05-0545	피신청인이 2020. 3. 4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단6918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함	집행정지신청(수원지방법원 2020아3277) 인용결정 (2020.3.25.)